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김영옥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 외 25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- ☐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☐ 현행 조례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감독 대상은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발달장애인의 “보호자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습니다.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감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한 대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.
- ☐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센터의

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 제고,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, 예산 등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